##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777

발의연월일 : 2022. 10. 11.

발 의 자:배준영·송언석·류성걸

박대출 • 윤영석 • 윤주경

박대수・김형동・金炳旭

윤창현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전세계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에 따른 글로 벌 에너지 비상상황에 직면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글로벌에너지 불안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동절기 에너지수요 확대, 러시아의 에너지 추가공급 축소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현재의 에너지 위기 상황은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음. 이제 우리도 에너지 다소비 구조에서 에너지 효율적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체질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내국인의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산업·경제구조를 에너지 고효율 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해서 감가상각 기간을 단축하여 조기에 감가상각비용을 손금으로 산입하는 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4 신설).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4(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절약시설(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절약시설"이라 한다)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해당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려는 내국인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산입 특례의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 28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에너지절약시설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28조의4(에너지절약시설의 감
	<u>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① 내</u>
	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
	너지 절약시설(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절약시설"이라 한다)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해당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
	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
	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
	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려는 내국인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산입 특례의 적용신청을 하
	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